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7. 임오경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5.)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2.26.)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
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의원)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 및 관광·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 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가. 총괄검토

-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도시의 확대¹⁾, 세계 주요 영화제와 비엔날레에서의 국내 작가·콘텐츠의 수상 사례 증가, BTS, 오징어게임 및 K-POP 데몬 헌터스 등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시장 성공 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의 도래를 보여줌.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제적 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는 문화교류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파급력을 창출하는 종합적 산업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23년 문화산업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2019년 101억 달러 대비 31.7%가 증가하였고, 콘텐츠산업 종사자도 70만명에 달하는데,²⁾ 국제문화행사는 문화산업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을 규율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국제경기대회법”이라고

1)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2004년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됨. UCCN은 8개 창의 분야(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건축)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간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차원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 중임. 2025년 기준 한국의 창의도시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및 전주시를 포함하여 13개임.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함)이 존재하지만, 문화 분야는 기획재정부의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고 있음.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제행사에 대해 국고 지원을 위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훈령 수준의 한계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며, 행사 유치 및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예산과 행정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정 목적	- 국제행사 유치·개최 시 국고지원의 체계적 심사 및 운영 기준 마련
적용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 국고 20억원 이상 지원 요청 행사
국제행사 정의	- 10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개최, 외국인 100명 이상 등 요건 충족시 - 국제회의, 국제경기대회, 박람회 등 포함 - 대규모 국제행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심사 기구	-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소속) 설치 및 운영 ※ 위원장: 기재부 2차관 ※ 위원: 유관 부처 고위공무원 + 필요시 민간전문가(최대 10인)
심사 절차	- 개최 전전년도 11월까지 개최계획서 제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책성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 여부 결정

정책성 등급 조사	- 행사 필요성, 비용 타당성, 파급효과 분석 등 - 정기행사에 대한 일몰제 및 연장평가 적용 - 필요시 면제 가능 (정책결정 행사 등)
개최협약	- 대규모 행사 시 기재부·소관부처·주관기관 간 협약 체결 의무 - 협약 불이행 시 국고보조 중단 가능
사후평가	- 개최 후 3~6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 미달 시 향후 감점, 국고 지원축소 등 불이익 부과

○ 이에 본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체계, 조직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및 세제지원,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먼저 국제문화행사는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공연·전시·축제·박람회 등’으로 정의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장 제공, 기반시설 조성, 치안·의료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각 행사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준비 및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기부금품의 접수,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부담금 감면, 외국인 출입국 간소화 등 국제행사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음.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 발행, 회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허

융합으로써 자금조달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 법률안 제정 시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를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각 부처,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질 것임.

- 또한, 문화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교적 자산 확보, 고용 창출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 대회(WYD 2027)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³⁾, 본 법률안은 WYD 2027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의 지원을 아우를 수 있고,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국제행사 추진 시 해당 국제 행사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법을 제정한다면 통합 운영·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주요 국제행사 특별법 제정 사례]

구분	주요 내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205356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성일중의원 대표발의, 2205695호),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박수현·이해민의원 대표발의, 2212068호)

	- 정상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교통 및 안전 대책 마련, 관련 사업 추진 등 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행사와 관련된 각종 특례를 두어 원활한 대회 운영을 돕기 위해 제정 - 잼버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참가자 안전 확보, 교통 및 위생 지원, 재정 지원 등 규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 및 생태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박람회 개최 후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관리 주체 등 규정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설 조성, 교통 및 통신 지원, 안전 관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 2015년 대구·경북에서 개최된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 - 포럼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박람회 종료 후 조성된 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 및 해양 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 박람회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지정하고,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박람회 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

	-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부지 확보, 시설 건설, 교통 및 통신망 구축, 재정 지원 등 규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지원법」	-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부대시설 설치 지원, 교통 및 숙박 편의 제공, 안전 관리, 재정 지원 등 규정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행사의 범위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매년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금품의 접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제6조 및 제11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으며, 세제지원(제10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고, 부담금 감면(제16조)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각각의 국제문화행사별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경기대회와 마찬가지로⁴⁾ 복권을 증량 발행할 수 있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도록 하고, 이 증량 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2022 베이징올림픽 때 팀코리아 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을 발행하여 창출된 판매수익으로 체육진흥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11. (생략)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20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총칙 사항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른 것임.

조문번호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행사의 총괄·조정 및 협조
제6조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제8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9조	국가 등의 지원
제10조	민간 참여 활성화 등
제11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2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3조	수익사업
제14조	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제15조	기념주화의 발행
제16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17조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	과태료
부칙	시행일

다.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은 법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제문화 행사’와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나.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사
라.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이란 국제문화행사에 사용되는 행사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행사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안 제1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의 제정 목적을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다만, ‘국제문화행사’라고만 명시하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도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⁵⁾.

- 유사 입법례인 국제경기대회법⁶⁾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 안 제2조는 ‘국제문화행사’와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국제문화행사를 정의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보임.

-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고, 라목의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5)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와 같은 의견임.

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국제문화행사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주관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1호 가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국제문화행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대상이 광범위하여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국제행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겠음.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 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박람회
 -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이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문화콘텐츠·미디어·종교·관광 분야의 국제 행사 및 국제체육대회를 말한다.
 - 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 경기대회
 -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박람회
 -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관비율이 10%이상인 문화 및 체육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국제행사가 안전하고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조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국제문화행사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인 국제경기대회법⁷⁾과 같이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안 제4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개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7) 국제경기대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3) 행사의 총괄·조정 및 협조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의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조(행사의 총괄·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2.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5.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그 밖에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임.
 - 국제문화행사 지원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정책의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원활한 행사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안 제6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행사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공간과 전문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현재 국제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는 국제행사 주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법무부 및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협조 절차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안전부는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특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조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제10조)

-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제 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문화행사에 후원,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조직위원회 구성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후원, 투자, 협찬 또는 지원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직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안 제9조제2항은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조직위원회의 업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직위원회의 업무와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유사입법례인 국제경기대회법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이라고 함)은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
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문화체육관광부도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유사 법
률인 국제경기대회법 수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제경기대회법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
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
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직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 제8조는 조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함)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하지만,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8)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 조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봄.

- 유사입법례인 새만금세계챔버리법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경주APEC정상회의법”이라고 함)도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 ⑥ (생략)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주APEC정상회의법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는 조직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국제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등의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문화행사가 경쟁력 있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유사입법례인 국제경기대회법도 조직위원회가 국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국제경기대회법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가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국제문화행사에 후원, 투자, 협찬 또는 지원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의 참여를 고취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며, 후원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명문화하여 민간 재원 유치를 활성화하고 행사의 재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⁹⁾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 소득세법 등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안 제11조)

-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물품을 양여·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지, 물품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으로써 원활한 국제문화행사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사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및 양여의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기관, 단체, 소상공인, 주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등(안 제12조~제16조)

- 제정안은 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 시의 채권 등의 매입 의무 면제, 수익사업 허용, 국제문화행사 회장 등의 사용, 기념주화의 발행,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장사업
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국제문화행사 회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회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6.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8.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안 제12조는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부동산 등의 취득 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문화행사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13조는 조직위원회가 회장사업,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 법인 및 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재정 자립도를 향상하고, 민간 협력 및 기념품 개발로 홍보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4조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조직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행사의 상징물의 무단사용을 방지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는 한편, 행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다만, 조직위원회 외에도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문화행사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당한 승인권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승인권자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승인권자를 조직위원회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유사 입법례인 국제경기대회법도 휘장 등 대회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국제경기대회법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5조는 조직위원회가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념주화의 발행을 통해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영구적으로 기념하고, 주화 수집을 통해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수익을 통해 재원 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

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사 주최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행사의 규모를 키우거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다만, 부담금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의 의견]

기획재정부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모든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면제 대상을 최소화하면서 부과 시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최대 90% 이상의 감면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성 감면은 성실히 감축활동에 참여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은 행사장 시설과 행사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으로, 기존 납부 중인 유사 용도 시설물의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다른 점용물과의 형평성 확보 등 신중 검토가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은 기금 주요 재원으로 농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의 보전과 조성 필요성, 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감면 확대는 어려움. 또한, 초지의 정책기조는 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보전·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50조 제11항 및 동법 제37조 제5항에서 자체 규정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입법 취지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오수를 발생시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개축 등을 초래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 관련 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함인데, 현재 상수도 생산 및 하수도 처리원가는 각각의 요금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평균 하수도 요금은 톤당 696원으로 처리원가 1,537원의 45.3% 수준이며, 이는 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23년 평균 상수도 요금은 톤당 796원으로 생산원가 1,069원의 74%)임. 이에, 상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충당 중인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상하수도 재정 여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은 국비, 지방비,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자원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7)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등(안 제17조~제19조)

-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국제문화행사 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17조는 국제문화행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행정, 재정, 홍보 등 다방면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다만, 지원단의 업무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지원단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단의 업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유사 입법례인 경주APEC정상회의법도 준비계획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경주APEC정상회의법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적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상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9조는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의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후원·협찬 과정에서의 사칭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8) 과태료(안 제20조)

- 제정안은 조직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제문화행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직위원회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과태료) ① 제14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20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안 제1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국제문화행사 상징물을 조직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와, 안 제19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니면서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행사의 상징물을 무단으로 영리 목적에 이용하거나 조직위원회를 사칭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

국제문화행사의 범위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는 등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수정하고,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감면 조항에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국제문화행사의 범위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는 등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수정하고,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감면 조항에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 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함(안 제1조).
- 나.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중 문화적 파급효과 및 문화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다. 조직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7조제1항).
- 라. 국제문화행사 후원·투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부담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삭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로 한다.

안 제2조제1호가목 중 “국제기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크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크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을 “시설 또는 공간 제공”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중 “구성”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로, “구성·운영”을 “설립”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0조의 제목 중 “활성화 등”을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중 “국유·공유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국유·공유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조직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를 “조직위원회”로 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부칙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제문화행사</u> 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u>국제기구</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나. (생략)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u>크다고 인정되는</u>	제2조(정의) ----- -----. 1. ----- ----- ----- ----- -----. 가. <u>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u> ----- ----- ----- ----- 나. (원안과 같음) 다. ----- ----- <u>크고 국가적 위상제</u>

<u>행사</u>	<u>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u>
<u>라.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u>	<u><삭 제></u>
2. (생 략)	2. (원안과 같음)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 ----- ----- -----.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1. ----- <u>시설 또는 공간 제공</u>
2. ~ 7. (생 략)	2. ~ 7. (원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7조(조직위원회 구성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① ----- ----- ----- <u>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u> -----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등) ① (생 략)

② 국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후원, 투자, 협찬 또는 지원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립-----.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원안 제1항과 같음)

<삭 제>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

-----국유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

-----조직위원

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
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
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3.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
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6. 「수도법」 및 「하수도법」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8.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회-----, -----

-----.

<삭 제>

<u>조성비</u> <u>제17조</u>(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생략) <u>제18조</u>(권한의 위임) (생략) <u>제19조</u>(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략) <u>제20조</u>(과태료) ① 제14조 또는 <u>제19조</u>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6조</u>(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원안 제17조와 같음) <u>제17조</u>(권한의 위임) (원안 제18조와 같음) <u>제18조</u>(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원안 제19조와 같음) <u>제19조</u>(과태료) ① ----- <u>제18조</u>----- ----- -. ② (원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나.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이란 국제문화행사에 사용되는 행사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행사장에 부대되는 편의

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사의 총괄·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5.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장사업
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국제문화행사 회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회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6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